

의안번호	2213871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0.
추 계 번호	25B5834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(식품수출 지원기관)	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(이하 “식품수출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(제2항) 2.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<u>연구개발</u> , 기술지원 및 지도·자문 사업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(식품수출 지원기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¹⁾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식품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

1) 제17조의3(식품수출 지원기관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개정안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 제17조의3제3항²⁾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식품수출지원기관이 수행하게 될 연구개발 과제 및 과제별 소요 예산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현행법에 따라 식품수출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 내용과 해당 사업별 지원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식품수출지원기관 주요 사업 내용 및 지원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사업 내용	2026년도 지원 예산
인증지원	국제공인 할랄연구실 운영, 식품성분 분석지원, 국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등	709
연구지원	국내 농식품 기업의 新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기업별 가공·공정기술, 감각평가, 인증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	300
정보제공	국내 할랄식품 인증 및 분석현황 DB 구축,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 및 수출상담실 운영, 新 식품시장 이슈리포트 제작·보급	300
인력양성	할랄·비건 인증 등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지원	—
합 계		1,309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2) 제17조의3(식품수출 지원기관)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